##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24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00204	조지연의원	2024.6.7.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8.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4.11.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24.11.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2201141	이재관의원	2024.6.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9.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법률안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24.11.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24.11.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 11. 2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11. 28.)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법률 제 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출"을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
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	①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	
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u>수출</u> (이	<u>수출하거</u>
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	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
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	출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